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청송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분요구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	○○○ ○○○과	청송 □□□시설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
2	○○○ ○○○과	청송 공공□□□□시설설치사업 사업비 정산 부적정	시정	-	-
3	○○○○○과	청송읍 □□□□□□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
4	○○○○○과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
5	○○○○○ ○○○과	군계획시설(소하천) 인·허가 의제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6	○○○○○ ○○○과	□□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
7	○○○○○ ○○○과	부남면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	-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송 □□□시설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아래[표] 사업현황과 같이 2016. 10. 25. ■■
■■(주) ☆☆☆과 공사계약(14,043,606천원)을 맺고, 2016. 11. 1. 착공하여 2020.
1. 1. 준공예정으로 청송▲▲▲ 시설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
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
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
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시험관리인¹⁾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는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기준에 맞게 품질관리자 2명을 선임²⁾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활동비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각각의 인건비를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사업비 158,52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 계상하고 있다.

2. 차선도색 관련

「경상북도 설계실무요령」에 의하면 차선도색의 경우 지방지역은 페인트식, 일교통량 10,000대 이상인 시가지지역은 용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

2) 품질관리자선임계 발체(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사업구간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선도색 공법은 상온형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융착식을 반영하여 공사비 161,452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송군 ○○○○○과에서는 청송▲▲▲ 시설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비 319,972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있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319,972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금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송 공공□□□□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등의 보조사업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송군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아래[표] 사업현황과 같이 보조사업 수행업
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
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관서
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
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
생된 금액만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

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비 미정산

그런데 청송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체결한 청송군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서에는 ▼-▼▼▼▼▼▼는 매 회계연도별로 집행된 각 사업비의 결산내역을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청송군에 제출한다라고 협약을 맺었으며,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연도말정산서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미 실시하였고, 또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35,102천원 정도를 반납 받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청송군 ○○○○○과에서는 위·수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미 실시하였고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35,102천원 정도를 미반납 받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위·수탁 사업에 대한 연도말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산토록 하고,
- ②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35,102천원은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송읍 □□□□□□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한국☆☆☆☆☆☆사업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아래 [표] 사업현황과 같이 청송읍 □□□□□□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

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서 시험관리인³⁾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은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는 초급기술자 1명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기준에 맞게 품질관리자 1명을 선임⁴⁾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초급기술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활동비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사업비 75,62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 계상하고 있다.

2. 현장사무실 관련

건설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편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기준 9억~30억 공사규모의 현장사무실은 230㎡(감독·감리자 100㎡, 수급자 130㎡), 기자재창고 60㎡, 숙소 80㎡ 등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독관사무실 등 현장사무실 규모를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적정 규모보다 과다하게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는 컨테이너로 설치하였음에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사업비 237,316천원⁵⁾(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고 있다.

3)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

4) 품질관리자선임계 발체(1공구 고급기술자 1명, 2공구 중급기술자 1명)

5) 가설사무실 설치비용 104,796천원 + 가설건물 전기공사비 132,520천원 = 237,316천원

3. 도로점용료 관련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구축공사는 공익사업으로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됨에도 불필요한 도로점용료 42,429천원을 과다계상 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송군 ○○○○○과에서는 청송읍 □□□□□□ 구축공사를 한국☆☆☆☆☆☆사업단과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 355,36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승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355,365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아래[표] 사업현황과 같이 2015. 12. 29. (주)■ ■ ■ ■ ■ ☆☆☆과 공사계약(2,684,379천원)을 맺고, 2016. 1. 7. 착공하여 2020. 1. 30. 준공예정으로 □□□□□□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 이행전 공사발주 부적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송군 ○○○○과(2017. 1. 1.자로 ▼▼▼▼에서 업무이관)에서는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2016. 4. 11.부터 2018. 3. 4.까지 693일간 시공중지하였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106,635천원⁶⁾을 준공대가 지급시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간 접비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등 재정손실이 불가피 하다.

2. 경상북도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청송군에서는 2016. 12. 2.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22건에 대한 처분요구 사항을 통보받았고, 이중 21건은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

6) ○○○○과 제출자료 발췌

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설치 불가능한 가배수로 마대쌓기 등 과다계상된 사업비 199,962천원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라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감사일 현재까지 미이행 하고 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 자연형 시설과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조성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이후의 비점오염원은 투수성포장 및 자연지반녹지를 계획하여 비점오염원 BOD 5.7kg/일, T-P 0.104kg/일로 산정하였고, 환경부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2016. 1월)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도서를 납품(2015. 11월)받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8개소를 실시설계시 임의로 반영하고 사업비 679,200천원⁷⁾ 정도를 과다계상하였다.

4. 시공상세도 관련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

7) 도급액 34,665천원 + 관급자재대 644,535천원 = 679,200천원(문화진흥과 제출자료 발췌)

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깨기(m^3)에 따른 철근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하여 $50kg/m^3$ 로 수량을 산출하여 공사 원가에 공제(-)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작성기준,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목록도 없이 불필요한 시공상세도 작성비 25,92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기존 구조물 깨기에 발생하는 철근 42ton의 고철비를 공제처리(-)하지 않고 원가를 산정하여 사업비 12,043천원을 과다 계상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송군 ○○○○과에서는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 하였고,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며, 사업비 917,12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917,125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청송군 □□□ ●○○●○○●
 ♣♣♣♣♣♣ ♠ ♠ ♠ (주민등록번호 *****-*****)
 (전 ▼▼▼▼▼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위 사람 ♠♠♠은 2015. 1. 19.부터 2015.12.31.까지 ▼▼▼▼▼ 위 공사 담당자로, 2016. 1. 1.부터 2016.12.31.까지 ▼▼▼▼▼ ●○○●○○●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

1. 행정절차 이행전 공사발주 부적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송군 ○○○○○과(2017. 1. 1.자로 ▼▼▼▼▼에서 업무이관)에서

는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2016. 4. 11.부터 2018. 3. 4.까지 693일간 시공중지하였다.

그 결과 위 부서에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106,635천원⁸⁾을 준공대가 지급시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간 접비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등 재정손실이 불가피 하다.

2. 경상북도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청송군에서는 2016. 12. 2.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22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았고, 이중 21건은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설치 불가능한 가배수로 마대쌓기 등 과다계상된 사업비 199,962천원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라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감사일 현재까지 미이행 하고 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 자연형 시설과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로

8) ○○○○○과 제출자료 발췌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조성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이후의 비점오염원은 투수성포장 및 자연지반녹지를 계획하여 비점오염원 BOD 5.7kg/일, T-P 0.104kg/일로 산정하였고, 환경부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2016. 1월)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도서를 납품(2015. 11월)받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8개소를 실시설계시 임의로 반영하고 사업비 679,200천원⁹⁾ 정도를 과다계상하였다.

4. 시공상세도 관련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깨기(m³)에 따른 철근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하여 50kg/m³로 수량을 산출하여 공사원가에 공제(-)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9) 도급액 34,665천원 + 관급자재대 644,535천원 = 679,200천원(◎◎◎◎과 제출자료 발췌)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작성기준,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목록도 없이 불필요한 시공상세도 작성비 25,92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기존 구조물 깨기에 발생하는 철근 42ton의 고철비를 공제처리(-)하지 않고 원가를 산정하여 사업비 12,043천원을 과다 계상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송군 ○○○○○과에서는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미이행 하였고,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며, 사업비 917,12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군계획시설사업(소하천) 인·허가 의제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5. 12. 1 ‘■▲■▲(주) ☆☆☆’와 계약하고 2018. 4. 5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총 2건의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의 규정에는 관리청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등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송군(○○○○○○○○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총 2건의 소하천인 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협의, 지형도면등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 시행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2017. 3. 27. ‘주 ☆☆☆’와 계약하고 2020. 3. 29.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표]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생략”

1. 품질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에는 시험종목 및 빈도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 시험장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반

영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따라 해마다 한번이상(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2015.6.30. 제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공 및 골재, 아스콘, 콘크리트 등에 대한 품질관리시험비를 반영하지도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사용 자재 관리 부적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시공편’에 따르면 가설공사용 자재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상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방서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지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산업규격(KS) 규정의 내용과 일치 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 할 각종 자재 및 재료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 가시설공 자재인 H형강의 경우 KS 표시품인지 알 수 없는 재사용 H형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시설 말뚝으로 시공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한전주 이설비 반영 부적정

「하천법」 제33조에는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시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0호, 2016.3.31.)」 제5조에는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및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천점용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송군 「하천점용허가조건」 제6항에는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시설물 철거 및 하천을 원상회복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 □□□□□□개선지구”의 사업시행은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이므로 청송군으로부터 하천구역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지장전주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피허가권자가 이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이설함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한 지장물 이설비 127,800천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4.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청송군(○○○○○○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7-1-3 전석쌓기 품의 경우 전석쌓기에 필요한 채움콘크리트 품이 기 포함되어 있음에도 채움콘크리트 품을 내역서에 중복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23,6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또한 교량 설치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조립품은 경제적인 공장가공품을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현장가공품을 적용하였으며, 이중 ‘ㄷㄷ교’ 및 ‘√√교’는 시공완료 되어 공사비 35,2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시공예정인 ‘ㄱㄱ교’ 및 ‘ㅍㅍㅍㅍ ㅍㅍ암거’의 경우에는 공사비 35,3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그 결과 위 하천공사에서는 품질관리 소홀, 공사용 자재관리 부적정 및 총 사업비 35,2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비 186,7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186,7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부남면 □□□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청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청송군 ○○○○○○○과에서는 “부남면 □□□ □□정비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4. 9. 11 ‘(주)■ ■ ■ ☆☆☆’과 계약하고 2018. 12. 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생략”

1. 품질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9에는 시험종목 및 빈도 등을 포함한 시험계획, 시험장비,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따라 해마다 한번이상(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2015.6.30. 제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송군 ○○○○○○○과에서는 토공 및 골재, 아스콘, 콘크리트 등에 대한 품질관리시험비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도급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 받지도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사용 자재 관리 부적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시공편’에 따르면 가설공사용 자재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관리된 것에 한하여 정기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을 상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횟수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방서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지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산업규격(KS) 규정의 내용과 일치 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 할 각종 자재 및 재료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 가시설공 자재인 H형강의 경우 KS 표시품인지 알 수 없는 재사용 H형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시설 말뚝으로 시공하였는데도 공사감독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사업추진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전선, 공중선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남면 □□□ □□정비사업’은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이므로 도로구역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지장전주는 상기의 규정에 따라 피허가권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하여야 함에도 내역서에 불필요한 지장물 이설비 57,000천원을 반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에서는 품질관리업무 소홀, 공사용 자재관리 부적정 및 총 사업비 57,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송군수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57,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